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9-136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9.

발 의 자 : 김종선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제6조제3항 “갈등영향분석서”를 “갈등영향분석보고서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제6조제3항 “갈등영향분석서”를 “갈등영향분석보고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갈등영향분석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③ _____ _____ <u>갈등영향분석서</u> _____.	제6조(갈등영향분석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_____ _____ <u>갈등영향분석보고</u> 서 _____.